

화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4. 10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'97. 4. 10
- 다. 상 정 일 자 : '97. 4. 17
(제54회 임시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 설명요지

- 가. 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정 부 응
- 나. 제안이유
 -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키 위함.
- 다. 주요내용
 - 제2조 제2항중 "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자치단체장등이"를 공무원으로서 군수가"로 개정
 - 제3조 제1항 및 제6조, 제7조 제1항 및 제3항중 "지방자치단체장등은"을 "군수는"으로 개정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민병항)

- 동 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키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- 제8조 제1항중 지방자치단체장등이"를 "군수가"로 제2항중 "당해 단체장"을 "군수"로 개정

4. 질의 답변요지

"생 략"

5. 토론요지

"생략"

6. 심사결과

"원안가결"

첨 부 : 화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. 끝.

화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7 - 38
----------	---------

제출 년월일 : 1997. 4. 10 .
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1. 제안이유

조례의 불합리한 용어 정비

2. 주요골자

조례제2조 제2항 중 "회계관계공무원"을 "공무원"을 개정.

조례제3조제1항및제3항, 제6조, 제7조제1항및제2항, 제8조제1항및제2항중
"지방자치단체장"을 "군수"로 개정

화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 중 "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자치단체장 등이"를 "공무원으로서 군수가
로 한다.

제3조 제1항 중 "지방자치단체장 등은"을 "군수는"으로 하고, 제3항 중 "지방자치
단체장 등을"은"군수를"로 한다.

제6조 중 "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"을 "군수는"으로 한다.

제7조 제1항 및 제3항 중 "지방자치단체장 등은"을 "군수는"으로 한다.

제8조 제1항 중 "지방자치단체장 등이"를 "군수가"로 하고, 동조 제2항 중 "당해
단체장"을 "군수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 구문 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<p>제2조 (회계관계공무원)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제1호에 계기된 자 이외의 <u>회계관계 공무원</u>으로서 <u>자치단체장</u>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.</p>	<p>제2조 (회계관계공무원)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 - - - - 이외의 <u>공무원</u>으로서 <u>군수가</u>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
<p>제3조 (재정보증) ① <u>지방자치단체장</u> 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 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<u>지방자치단체장</u> 등을 <u>피보험인</u>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<u>피보증인</u>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3조 (재정보증) ① <u>군수는</u>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 - - - - <u>군수를</u>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 (보험료의 지급)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 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 (보험료의 지급) <u>군수는</u>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
<p>제7조 (보험금의 청구 및 상) ① <u>지방자치단체장</u> 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이</p>	<p>제7조 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<u>군수</u>는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

신. 구문 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<p>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,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③ 지방자치단체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.</p>	<p>③ <u>군수</u>는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8조 (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, 피보증인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.</p>	<p>제8조 (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) ① <u>군수</u>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<u>군수</u> ----- ----- -----</p>